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'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'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건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158,863
1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영등포구민회관 보수, 구조 보강	48,863
2		영등포구민회관 옥상방수	110,00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 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-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,
영등포구민회관 지하1층 천정 부분이 균열 및 변형으로 인해,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,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구민의 안전 확보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비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.
-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에 따라, 출연금액의 규모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여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6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다. 사업내용

- 영등포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 관리·운영

라. 출연 필요성

- 영등포구민회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, 구조보강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위 : 영등포구민회관 관리
- 출연금액 : 48,863천원
 - 영등포구민회관 보수, 보강 공사 설계비 : 3,873천원
 - 영등포구민회관 보수, 보강 공사비 : 44,990천원

※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7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-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·배치한다.
-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, 전시, 문화강좌, 학술,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, 구청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